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347>

JCCT 2023-11-42

간호대학생의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 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 and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이주연*

Lee Joo Yeo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의 관계를 살펴 보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였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194명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적 통계, independent-test와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아동 권리인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도로 총 설명력은 19%였다. 따라서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예비 간호사로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아동 체벌, 아동 권리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 간호대학생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aimed at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child corporal punishment, their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s, and thei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It also seek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 2023, to June 30, 2023,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dministered to 194 nursing college student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WIN 26.0 software and included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s,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towards child corporal punishment and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ttitudes towards child corporal punishment and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collectively explained 19% of the variance i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hat allow prospective nurses, who have a legal obligation to report child abuse, to experience cases of child abuse, enhance their sensitivity to child abuse, and improve their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Key words :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Recognition of Rights, Child Abuse, Intention to Report, Nursing Student

*정희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제1저자)
접수일: 2023년 10월 3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3,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wndus@ chsu.ac.kr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 Science, Korea

I. 서론

최근 아동학대는 국내 영유아의 유기, 학대로 인한 사망 등 아동학대 사건의 언론보도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1].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은 인구 10만명 당 502.2건으로 2011년 61.6건에 비해 약 8배로 급격하게 증가한 추세이다[2].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체벌을 훈육의 수단으로 인식해왔으며 부모는 자녀를 훈육할 때 매를 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체벌이 아동의 행동을 조절하는데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전반적인 사회 분위기는 체벌에 대한 허용적인 부분이 있다[3]. 이러한 분위기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학대 행위를 합리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으며[3], 학대당하는 아동의 입장에서 스스로 부모를 신고하기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된다[4].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방임과 정서적 학대의 경우 오랜 시간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발견하기 어려우며, 학대에 대한 아동의 후유증은 예측할 수 없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1, 5].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읽기와 추상적 사고능력이 학대 경험이 없는 아동에 비해 점수가 낮고, 학령기 청소년기에는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퇴학, 약물남용, 혼전임신, 우울증 등 부정적인 문제 행동 유발과도 관련이 있다[6].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아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7], 간호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간호 실무현장에서 아동과 가족을 접촉하면서 아동-부모의 상호작용 등에 관한 중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5]. 간호사는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과 환경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아동학대 발생 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대상 아동에게 간호중재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8].

간호대학생은 학교를 졸업 후 간호사이자 의료인으로서 병원환경에서 근무할 뿐 아니라 초·중등학교 교사, 아동보육교사, 지역사회 보건소 및 아동복지센터 등 유아와 아동이 존재하는 많은 환경에서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같은 곳에서 학대 아동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5].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대 부모의 처벌에 대한 태도, 전문가적인 책임에 대한 태도 및 지각된 행위통제력이었고[9], 아동학대 관련 교육횟수가 많을수록 신고의도가 높았다[10]. 이에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고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지식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갖출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의 권리는 스스로 권리의 주체가 되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며 주변의 환경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성인의 조력이 필요하다[11]. 즉, 성인이 아동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지각하지 못하면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운 반면, 성인이 아동권리 인식과 실천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우 아동은 권리존중을 받을 수 있다. Park과 Kim [12]의 연구에서 아동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아동의 권리존중 실행 정도가 높았으며, 부모와 교사 등 성인이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중요하게 인식한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률도 높아질 수 있다[11, 12].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임상현장과 지역사회 및 학교 등 다양한 곳에서 아동을 돌보는 역할을 담당하게 될 간호대학생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관계 살펴보고,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권리인식이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경북소재 M대학교 1개와 대전광역시

시 소재 D대학교 1개의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로 하였다. 표본 수 결정은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유의수준 0.05, 효과크기 0.15 및 검정력 0.95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회귀분석에 필요한 최소 표본 수는 172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21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10부의 설문지가 배부되었고, 이중 응답이 불충분한 16부를 제외한 194부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3. 연구도구

1)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Feng & Levine [13]이 개발한 측정도구(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CARIS)를 Cho 등[9]이 아동학대에 대한 태도를 발췌하여 번역·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동학대 태도 도구는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학대부모의 처벌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의 3가지 하부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6점 척도로 ‘강력히 동의하지 않는다’ 1점부터 ‘강력히 동의한다’ 6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체벌에 대하여 관대함을 의미한다. Feng 등[13]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0.77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093이었다.

2) 아동 권리인식

아동권리 인식은 Hart와 Zeinder [14]이 개발한 아동권리인식 측정도구(Child Rights Recognition Scale, CRRS)를 Lee와 Kang [15]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아동들에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인정된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4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점부터 ‘매우 중요하다’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 권리인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Hart 등[14]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097이었다.

3) 아동학대 신고의도

Feng 등 [8]이 개발한 아동학대 신고 의도 측정 도구 Child Abuse Report Intention Scale (CARIS)의 하위 영역인 아동학대 신고 의도 측정 도구를 토대로 Kim과 Kang [16]이 수정·보완한 아동학대 신고의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가상의 아동학대 의심 사례 유형 별로 심각한 사례 1개, 경미한 사례 1개씩 신체적 학대 2문항, 정서적 학대 2문항, 성적 학대 2문항, 방임 2문항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Likert 척도로 1점 ‘매우 그렇지 않다’에서 7점 ‘매우 그렇다’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동학대 신고 의도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Feng 등[8]의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5이었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는 .081이었다.

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경북 소재 M대학교 1곳과 대전광역시 소재 D대학교 1곳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설문 진행 전 연구 대상 대학의 학과장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설문 목적과 취지에 대한 내용을 반 대표에게 설명하고, 연구 도중 철회가 언제든지 가능하며 비밀보장 및 자료의 익명성이 보장됨을 미리 설명 후 진행하였다. 반대표를 통해 설문지를 학과 전체 카톡방에 온라인 폼으로 만들어진 설문 링크를 올려 설문에 동의한 학생 한 학생들은 연구에 대한 설명문을 읽고 연구 참여에 동의 의사를 확인 후 설문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5)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IBM SPSS/WIN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 빈도 및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는 independent-test와 ANOVA, Scheffe ‘test로 사후검정하여 분석하였다.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으며,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체벌에 대한 태도, 권리인식, 신고의도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성은 154명(79.4%)이었으며, 연령은 21~25세가 129명(66.5%)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4학년이 63명(32.5%)으로 가장 많았으며 3학년 57명(29.4%)이었고, 아동간호 임상실습 경험은 '없음' 응답자가 123명(63.4%)이었고, 아동학대에 관심은 '있음' 응답자가 150명(77.3%)으로 많았다. 아동학대에 관한 교육은 경험은 '있음' 응답자가 111명(57.2%)이었고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 138명(71.5%)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하다' 47명(24.4%)으로 많았다.<Table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의 필요성($F=8.32, p<.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가 '매우 필요하다' 보다 높았다.

아동 권리인식은 학년($F=4.60, p=.004$), 아동간호 임상실습 경험($t=-2.88, p=.005$),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F=10.52,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2학년이 4학년보다 아동 권리인식이 높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가 '보통이다'와 '필요하다' 보다 높았다.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F=14.16,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매우 필요하다'가 '필요하지 않다'와 '보통이다' 보다 높았다.

2. 대상자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정도

대상자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정도는 다음과 같다. 아동

표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의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차이

Table 1. Differences in the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ccording to Participants' General Characteristics (N=19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Male	40(20.6)	3.01±1.42	2.76 (.008)	4.41±.48	-1.10 (.271)	5.73±.81	-1.68 (.095)
	Female	154(79.4)	2.43±1.06		4.56±.47		5.90±.82	
Age(year)	20>	36(18.6)	2.89±1.10	1.75 (.177)	4.60±.49	.567 (.568)	5.81±.88	.71 (.497)
	21-25	129(66.5)	2.47±1.19		4.51±.48		5.84±.84	
	<26	29(14.9)	2.79±1.16		4.52±.48		6.02±.67	
College year	Freshman	31(16.0)	2.91±1.02	1.06 (.367)	4.59±.52	4.60 (.004) b>a	5.81±.92	.81 (.490)
	Sophomore ^a	43(22.1)	2.49±1.10		4.68±.42		5.93±.73	
	Junior	57(29.4)	2.53±1.18		4.55±.52		5.96±.71	
	Senior ^b	63(32.5)	2.51±1.28		4.36±.52		5.75±.92	
Pediatric Nursing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Yes	71(36.6)	2.56±1.30	-.18 (.856)	4.39±.52	-2.88 (.005)	5.80±.89	-.81 (.420)
	No	123(63.4)	2.59±1.10		4.60±.43		5.90±.78	
Interest in Child Abuse	Yes	150(77.3)	2.53±1.13	-.97 (.333)	4.56±.47	1.61 (.109)	5.92±.75	1.78 (0.081)
	No	44(22.7)	2.72±1.30		4.42±.49		5.64±1.01	
Educational Experience in Child Abuse	Yes	111(57.2)	2.57±1.24	-.18 (.855)	4.50±.51	-.78 (.439)	5.94±.82	1.56 (.120)
	No	83(42.8)	2.59±1.09		4.56±.42		5.76±.81	
Need for Education on Child Abuse	Not needed ^a	3(1.5)	4.83±1.59	8.32 (<.001) a,c>d	4.28±.70	10.52 (<.001) d>b,c	4.33±.92	14.16 (<.001) d>a,c
	moderate ^b	5(2.6)	3.10±1.75		3.81±.66		5.55±1.19	
	need ^c	47(24.4)	2.99±1.20		4.32±.477		5.38±.78	
	absolutely necessary ^d	138(71.5)	2.36±1.04		4.63±.42		6.06±.72	

체벌에 대한 태도는 6점 만점에 2.58±1.17점, 아동 권리인식은 5점 만점에 4.52±.48점,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7점 만점에 5.86±.8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 아동 학대 신고의도의 정도

Table 2. Degree of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N=194)

Variables	Mean±SD	Min/Max	Range
Attitudes toward Child corporal Punishment	2.58±1.17	1.00/6.00	1-6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	4.52±.48	3.00/5.00	1-5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5.86±.82	3.38/7.00	1-7

3. 대상자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권리인식, 아동 학대 신고의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권리인식, 아동 학대 신고의도와 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권리인식($r=-.19, p=.009$)과 아동학대 신고의도($r=-.24, p<.001$)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권리의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r=.41, p<.001$)와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Table 3>.

4. 대상자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입력방법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 분석을 시행하기 전 Dubin-Watson 통계량은 1.693으로 자기상관이 없었으며, 공차한계(Tolerance)는 .965로 0.1이상 이었고,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

표 4.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Table 4. Influencing Factors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Variable	B	SE	β	t	p	R ²	Adj. R2	F	p
(constant)	3.24	.55		5.86	<.001	.20	.19	23.31	<.001
Attitudes toward child corporal punishment	-.12	.046	-.17	-2.62	.01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	.65	.11	.38	5.70	<.001				

ionfactor, VIF)는 1.036으로 기준치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회귀 분석 결과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beta=-.17, p=.01$)와 권리인식($\beta=.38, p<.001$)이 유의하였고, 총 설명력은 19%였다 <Table 4>.

표 3.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 아동 학대 신고의도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Attitudes Toward the Use of Corporal Punishment on Children, Recognition of Children's Right and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N=194)

Variables	Attitudes toward Child corporal Punishment	Recogniti on of Children Right	Report Child Abuse
	r(p)	r(p)	r(p)
Attitudes toward child corporal punishment	1		
Recognition of Children Right	-.19 (<.009)	1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24 (<.001)	.41 (<.001)	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 정도를 파악하고, 이들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중재 방안 모색을 위한 근거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6점 만점에 2.58점으로 평균점수보다 낮은

점수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 등[9]의 연구결과 2.85점보다 낮았다. 이는 연구대상자의 학년이 다르고 아동에 대한 체벌 허용범위와 훈육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 차이가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추후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에 대해 다양한 연령층, 지역별 및 사회계층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아동 권리인식은 5점 만점에 4.52점으로 평균 점수보다 높았으며,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Lee와 In [18]의 연구결과 4.51점으로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뿐 아니라 유아교사들도 아동을 일선에서 돌보며 안전과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인식은 다양한 경험, 생각 등을 기초로 형성되는 사고 과정이므로[19], 간호대학생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임상 현장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 결과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다' 응답그룹과 '필요하다' 응답그룹이 '매우 필요하다' 응답그룹보다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이는 아동체벌을 훈육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높지 않아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훈육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아 훈육의 동기가 있을 때는 행위나 결과가 종종 무시될 수 있다[20]. 아동체벌과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과 올바른 교육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훈육과 불분명한 경계로 초래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간호대학생의 아동 권리인식은 학년, 아동간호실습경험,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정 결과 2학년이 4학년보다, 아동간호실습 경험이 있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높았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매우 필요하다' 응답그룹이 '필요하지 않다' 응답그룹과 '필요하다' 응답그룹보다 아동 권리인식이 높았다. 이는 간호대학생

을 대상으로 한 Lee [17]의 연구 결과 학년에 따라 아동의 권리인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Mun [21]의 연구결과 연령이 낮을수록 아동 권리인식이 높아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학대 및 아동 권리에 대한 교육이 임상 현장에 있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대학생도 아동의 권리와 학대와 관련된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의미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수준을 높이고 현장에서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을 넓히기 위해 대학 1학년 때부터 또는 임상실습 전부터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사후검정결과 '매우 필요하다' 응답그룹이 '필요하지 않다' 응답그룹과 '필요하다' 응답그룹보다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과의 차이점을 연구한 논문을 찾아보기 어려워 아동학대 신고의도와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의 관계를 알아보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간호교육에서 아동학대 관련 교육은 한국간호과학회에서 제시하고 아동간호학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아동학대 교육 유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아동학대와 관련된 교육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17]. 따라서 아동학대에 관련된 교육과정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학대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 권리인식 및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 권리인식, 그리고 아동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학대 신고의도와는 유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아동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아동체벌에 태도가 관대할수록 아동에 대한 권리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낮았고, 아동에 대한 권리

인식이 높으면 아동학대 신고의도가 높았다. Cho 등[9]의 연구에서 아동의 학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아동의 신고의도가 높았으며,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신고의도도 높아 [17, 22]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아동의 체벌에 대한 태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지식은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아동학대와 체벌에 대한 사례를 학습하고 실습을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 분석 결과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 권리인식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19%였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Cho 등 [9]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적 책임에 대한 태도, 아동학대에 대한 지식이 영향 요인이었고,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Kim 등[22]의 연구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도의 영향 요인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아동학대에 대한 교사의 책임감 및 사례지식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Kim과 Park [23]의 연구에서는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신고제도가 신고센터를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 후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를 망설이거나, 아동학대 신고를 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성을 높이고 정확한 신고를 위해 아동학대를 판단할 수 있는 개념, 정의, 근거 및 신고과정에 대한 분명한 지침 마련과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신고의도에 미치는 중요한 변수인 아동 체벌에 대한 태도와 아동 권리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를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교육 방법을 적용하여 미래 전문간호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V. 결 론

간호대학생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과 아동학대 신고의도를 높이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기본지식과 신고절차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신고를 위한 준비 즉, 아동학대에 대한 사례연습과 교육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아동학대 의심 시 적절히 개입하고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기관의 관점에서 보육기관과 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계획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 해야 한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을 예방적 지원체제로 확대하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K.H. Kim, "A Survey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n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1, No. 2, pp.21-30, 2017.
- [2] Statistics Korea, "The Safety Report of Korea 2022", 2023.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150000&bid=246&act=view&list_no=425096
- [3] D.H. An, H.S. Park and H. J. Lee, "The Attitude toward Child Abus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37, No. 4, pp. 661-673, 1998.
- [4] H.S. Kim, "The Factors Related to Child Abuse Recognition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Health Care and Lié Science*, Vol. 6, No. 1, pp. 79-84, 2018.
- [5] E.J. Kim, and K.M. Cho, "A study on childhood experience of domestic violence, abuse victim and the perception about severity child abus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Play Therapy*, Vol. 15, No. 2, pp. 97-109, 2011.
- [6] H.S. Pyun, and J.K. Choi, "The associations among poor single mothers' economic hardship, depressive symptoms, parenting stress, child abuse and neglect, and their children's developmen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Vol. 53, pp. 1-23, 2016.
- [7] E.J. Kim, and H.R. Kim,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Parenting Attitudes and the

- Recognition of Child Rights and Child Abus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4, No. 4 pp. 319-327, 2023. <https://doi.org/10.5762/KAIS.2023.24.4.319>
- [8] J.Y. Feng,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at Buffalo,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 2003.
- [9] K.M. Cho, and E.J. Kim, “Nursing Students’ Knowledge, Attitudes, Perceived Behavior Control and Intention to Report Cases of Child Abuse, *Child Health Nurse Research*, Vol. 22, No. 2, pp. 145-152. 2016. <http://dx.doi.org/10.4094/chnr.2016.22.2.145>
- [10] Y.S. Jeong, S.Y. Jang, M.K. Song, D.J. Kum, S.E. Park, and K.S. Bang, “Child Abuse Awareness and Reporting Intention among Nursing and Education Students”, *Journal of Academy Social Nursing Education*, Vol. 25, No. 2, pp. 216-226, 2019. <https://doi.org/10.5977/jkasne.2019.25.2.216>
- [11] S.Y. Oh, and J.S. Han, “Influence of Korean-Chinese mothers’ awareness of young children’s rights on their implementation of child right”,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27, No. 2, pp. 377-396, 2023. <http://doi.org/10.21459/kccr.2023.27.2.377>
- [12] H.J. Park, and J.K. Kim, “The effects of childcare teachers’ sensitivity, awareness of children’s right and organization culture on the implementation of childcare respecting rights for infan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25, No. 3, pp. 285-304, 2021. <http://doi.org/10.21459/kccr.2021.25.3.285>
- [13] J.Y. Feng, and M. Levine, “Factors associated with nurses’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 national survey of taiwanese nurses”, *Child Abuse & Neglect*, Vol. 29, No. 7, pp. 783-795, 2005. <http://doi.org/10.1016/j.chiabu.2004.11.006>
- [14] S. Hart, and M. Zeidnet, “Children’s rights: Cross-national research on perspectives of children another teachers”, *Jessie Kingsley Publishers*, Vol. 1, No. 4, pp. 165-188, 1993.
- [15] J. Y. Lee, S. H. Kang, “A child’s perception of rights children and rights,” *Children and Child’s Rights*. Vol. 1, No. 1, pp. 65-83, 1997
- [16] S.I. Kim, and J.Y. Kang,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Prevention Education on the Intention to Report Child Maltreatment among Future Mandatory Reporters: The Mediating Effects of Knowledge of Recognizing and Reporting Child Maltreatment”,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Vol. 55, pp. 373-400, 2017. <http://doi.org/10.17997/SWRY.55.1.13>.
- [17] Y.H. Lee, “Nursing Students’ Child Rights Recognition and Child Abuse Perception”, *Archive of Health and Nursing Research*, Vol. 16, No. 1, pp. 11-17, 2021.
- [18] S.E. Lee and J.S. I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mmunication Ability and Empathetic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and Guidance Strategy for Problem Behavior”, *Journal of Child Welfare and Development*, Vol. 20, No. 1, pp. 21-42, 2022. <http://dx.doi.org/10.35639/daehan.2022.20.1.21>
- [19] S.H. Jwa, and S.J. Eom, “The Effects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Teaching Ethics and Empathy on Awareness of Children’s Rights”,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JCCT)*, Vol. 9, No. 1, pp. 281-286,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1.281>
- [20] H.S. Kim, “Relation between student’s understanding of child abuse behavior and perception on the children’s rights”,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 4, No. 1, pp. 93-104, 2000.
- [21] S.Y. Lee and Y.W. Mun,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Self-Esteem and Recognition of Righ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 No. 1, pp. 65-89, 2002.
- [22] H.J. Kim, and M.K. Park, “The factor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reporting intention on child abuse”, *Journal of Korean Council for Children & Rights*, Vol.22, No.2, pp. 127-144, 2018. <http://doi.org/10.21459/kccr.2018.22.2.127>
- [23] J.S. Kim, and G.S. Park, “Predictors of Intention to Report Child Abuse among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Child Health Nurse*, Vol. 11, No. 2, pp. 211-220, 2005.